

#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박세채 의원 외 14인

### 2. 제안이유

- 지역주민과 상근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는 등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3)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별표 1)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주차장법」 제10조,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상가지역 등에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의 지정·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도로의 질서 확립을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 검토 결과,

- 안 제13조의3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0조<sup>1)</sup>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sup>2)</sup>에 따라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해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으로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1)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2)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에 따라 월정기요금으로 주간 25,000원, 야간 20,000원, 주·야간은 30,000원으로 1급지 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주차요금 부담 경감화 및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별표 7에서는 제4호의 단독주택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3)에 따른 설치기준과 맞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은 1대로, 150㎡ 초과에 대한 사항은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설정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3)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br>○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
|----------------------|--------------------------------------------------------------------------------------------------------|